

부산광역시 공고 제2026-1824호

도시관리계획(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 열람공고

-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4-496호(2025.1.1.)로 결정(변경) 고시된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1123-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(연산역1 준주거복합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에 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2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「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9조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.
- 아래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열람장소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6월 3일

부산광역시장

가. 열람기간: 2026. 6. 3.~2026. 6. 17. (14일간)

나. 열람장소: 부산광역시청(주택정책과 ☎051-888-4205), 연제구청(건설과 ☎

051-665-4724)

부산도시계획아고라홈페이지>>도시계획소통>>도시관리계획입안·결정>>열람공고

(https://www.busan.go.kr/depart/agora)

다.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(안): 도면 게재는 생략하며, 열람장소에 비치합니다.

☐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(안)

1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2.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(변경없음)

3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(변경)

기정	변경안
제12조 (건축물의 형태) ① 구역내 건축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주거복합 건축물로 계획하여야 하며, 건축물 연면적의 5/100 이상은 상업·업무 등 2개 이상의 비주거용도(주택법에 따른 준주택은 제외)로 계획하여야 한다. ②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,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. ③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다.	제12조 (건축물의 형태) 〈삭 제〉 ① 도로변에 접한 부분에는 출입구, 창문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도로경계선 밖으로 돌출하지 않도록 한다. ② 기타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별법령에 따른다.

기정	변경안
제23조 (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·(생략) 〈신 설〉	제23조 (지구단위계획의 경미한 변경) ①·(현행과 같음) -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작성지침 2-1.(5) 기타 사항의 경미한 변경은 도시군계획시설 경미한 변경 준용 -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른 기부채납시설 조정 등 결정권자가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

※ 변경사유 :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, 부산광역시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개정사항 반영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